[2024.3.1.시행] [2023.8.16.개정]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JEOLLABUKDO WANJU OFFICE OF EDUCATION

홈페이지 http://www.jbwje.kr/알림마당/인사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목 차

제 1 장 총칙 ····· 1

제 2 장 신규 및 전입교사 임지 배치 ····· 1

제 3 장 교(원)감 전보 ····· 2

제 4 장 교사 전보 ····· 4

<별표 1>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 기준 ····· 9

<별표 2> 학교소재급지 일람표 ····· 16

부칙 ·····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관내 공립유치원 및 공립 초등교원의 인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본 군 내 공립유치원 교원, 초등학교 교원, 초등보건교사, 특수교사(유ㆍ초등),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이하 ‘초등교원’이라 함)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인사관계 제법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유·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에 의거한다.

② 본인의 희망지를 우선하되 생활근거지를 참작하여 생활 안정을 기한다.

③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성을 배제하여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④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인사행정의 신뢰를 정착한다.

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시행당시의 인사계획에 따라 인사 실무세칙을 수립 시행한다.

제2장 신규교사 및 전입교사 임지 배치

제4조(급지 설정) 본 군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5개 급지로 인사 급지를 설정 운영한다.**<개정 2021.8.20.>**

① 1급지 학교 : 동상, 봉동, 봉서(3교)

② 2급지 학교 : 용봉, 이서, 삼례, 삼례중앙, 상관, 청완(6교), 봉동유치원, 봉서유치원(2원) **<개정 2023.8.16.>**

③ 3급지 학교 : 태봉, 고산, 삼우, 송광, 동양, 구이, 청명, 용진, 간중, 남관, 봉성, 삼례동, 소양, 소양서, 이성(15교)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완주Wee센터(2기관)

④ 4급지 학교 : 가천, 화산, 대덕, 비봉, 봉동양화(분)(4교 1분교)

⑤ 5급지 학교 : 운주(1교)

제5조(임지배치) 신규교사 및 전입교사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배치한다.

① 신규 임용자와 도간 및 시·군간 전입자 임지배치는 관내 교사 임지배치 후 실시하되 시・군간 전입, 도간 전입, 신규 임용자 순으로 임지를 배치한다.(단, 체육특기교사는 지정 종목 육성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② 도교육청 전보 서열부에 의하여 상위자 순으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신규교사 비율이 단위학교 교사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학기 중 신규 임용할 경우 또는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신규교사는 가급적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기 중 결원이 발생될 경우 신규교사를 우선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⑤ 장애구분 모집에 의한 신규교사의 임지는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3장 교(원)감 전보

제6조(대상)

① 동일교 2년 이상 근속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단, 복수교감이 배치된 학교의 교감은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교 1년 이상 근속자를 전보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② 근무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 조치할 수 있다.

1. 교감의 결원이 생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징계 처분된 자와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3. 사고나 물의 야기로 근무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자

제7조(내신 시기) 학년말 내신에 의하여 전보서열을 정하여 배치하고, 학기 도중 전보 요인이 발생 시는 추가 내신에 의거 전보할 수 있다.

제8조(순환 전보) 동일교 5년 이상 근속자(벽지학교 3년)는 전보 조치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특수훈련을 받은 자 또는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
2. 벽지학교 전입 희망자가 없을 경우
3. 정년이 1년 이하로 남은 자 <신설 2019.8.16.>
4. 1년 이내에 통폐합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는 자 <신설 2019.8.16.>

제9조(전보의 제한)

① 벽지학교는 본 군 벽지학교 근무 경력이 없는 자 또는 근무 경력이 적은 자를 우선 배치한다.

② 벽지학교 전입 희망자가 경합될 때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본 군 교감 경력이 많은 자

나. 교감 경력이 많은 자

다. 교육 경력이 많은 자

제10조(서열부 작성)

교(원)감의 전보서열은 <별표 1>의 '전보 서열부' 작성 평정기준에 의하여 학교 급지별 가산점, 우대가산점 등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배치하며, 순환전보 대상자를 우선 배치한다. 다만 동점일 경우는 제11조에 의한다. <개정 2021.8.20.>

제11조(우선 순위)

① 전보 희망자가 동점으로 경합이 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전보 한다.

1. 본군 장기 근속자
2. 교육 경력이 많은 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② 정원변동(과원조정 포함)에 따른 과원교감 발생 시, 타시군 전보는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한다.

- 타시군 전보 희망자
- 완주군 교감 경력이 많은 자
- 교감 미배치교 예정 학교(감축대상학교) 재직 교감

단, 동일 조건 시 다음 순에 의하여 정한다.

- 생년월일이 느린 자
- ~~생년월일이 빠른 자~~ <신설 2021.8.20.> <삭제 2023.8.16.>

제4장 교사 전보

제12조(대상)

① 동일교 2년 이상 근속자를 기본대상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등의 전보는 초등교사 전보에 준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8.20.>

가. 징계 처분된 자와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나. 사고나 물의 야기로 근무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자

다. 현임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1.8.20.>

라.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 또는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원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신설 2021.8.20.>

④ 동일교 5년 근속자(벽지학교 3년)는 순환전보 대상자로 전보서열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1.8.20.>

제13조(내신 시기)

전보는 매년 3월 1일 내신에 의하여 전보서열을 정하여 배치하고, 학기 도중 전보요인이 발생 시는 신규 또는 휴직복직, 파견복귀자를 발령할 수 있다.

제14조(전보서열부 작성)

① 교사의 전보는 <별표1>의 '전보 서열부 작성기준'에 의하여 순환전보와 일반전보 서열부를 각각 작성하며 순환전보 대상자를 우선 배치한다. 단, 전보 서열부의 작성 가산점은 <별표1>에 의한다.
<개정 2021.8.20.>

② 전보서열부의 경력점, 우대 가산점은 본군 동일교 최근 5년 이내를 평정한다.**<개정 2023.8.16.>**

③ 경력평정점에서 월 환산점으로 계산하고자 할 때는 14일 이하는 절사하고 15일 이상은 절상한다.

④ 전보 서열이 남·여 어느 일방으로 편중되면 남·여별로 전보서열을 구분 작성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벽지학교는 제외한다.)

⑤ 부부 교원과 직계존비속 교원은 동일교에 배치하지 않는다.
<신설 2021.8.20.>

제15조(벽지학교의 전보)

① 벽지학교에는 본 군 동일교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중 벽지학교 진흥법 발효 후 타 시·군 벽지학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벽지학교 근무 경력 연수에 따라 (별표1)의 전보서열부 작성 시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여 전보한다.

② 벽지학교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전보서열부는 별도로 작성하며 경력점, 우대가산점은 본군 최근 8년 이내를 평정한다. **<신설 2021.8.20., 2023.3.1.자 인사부터 적용> <개정 2023.8.16.>**

제16조(우선 순위)

전보 서열부 작성 시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서열을 정한다.

가. 동일교 장기근속자(단, 최근 5년까지만 인정한다.)<개정 2021.8.20.>
나. 교육 경력이 많은 자
다.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17조(전보유예) 동일교 5년 이상 근속자(벽지학교 3년이상)는 전보 조치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단, 벽지학교의 경우는 유예를 인정하지 않으며, 각 호를 합산하여 2명을 초과할 수 없다.(6호 조항은 제외)<개정 2021.8.20.>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교원 정원의 10% 이내에서 1년 동안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으나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경합이 되지 않는 학교에 한한다. <개정 2019.8.16.>
2. 도지정 이상의 연구학교(실험, 시범학교 포함) 주무자로서 연구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9.8.16.>
4. 혁신학교 및 혁신+ 학교 만기근무자 중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정원의 10%범위에서 2년 이내에서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5. 체육특기교사로서 소년체전 및 동계체전 지정종목 육성을 위하여 전보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전보된 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학교에서 지도한 학생(개인・단체)이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자(5개팀 이상 참가한 대회)는 <u>5년간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다.</u>
6. 혁신+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는 학교의 필요와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5년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재직교원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9.8.16.> <2025.3.1. 삭제>
7. 정년이 1년 이하로 남은 자 <신설 2019.8.16.>

제18조(1급지 학교의 전보) <삭제 2019.8.16.>

제19조(학교장의 전입요청에 따른 전보) 지역과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의 전보희망에 의하여 단위학교의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단, 벽지학교는 제외한다.)

1. 도지정 이상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정원의 10% 이내(단, 10학급 미만 연구학교는 1명)
2. 교과전담을 희망하는 자로서 도 대회 동상 이상의 지도 실적이 있는 교사
3. 체육특기교사

제20조(폐교 및 정원 변동으로 인한 전보) <개정 2021.8.20.>

① 폐교, 학급감축, 정원변동으로 과원이 발생하여 부득이 전보할 경우에는 일반전보 서열부에 의하여 전보한다. 단, 일반전보 서열부에 의하여 전보가 어려울 경우 별도 서열부를 작성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21.8.20.>

② 폐교, 학급감축, 정원변동으로 과원이 발생하여 부득이 관내 전보된 자와 복직 및 복귀 시 원적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복직한 경우에는 전보 전·후학교(유치원)의 근무기간을 별도로 합산하여 동일교(유치원) 근무 기간(최근 5년까지)에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20.>

③ 폐교, 학급감축, 정원조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 관외 전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단, 완주군 실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교사는 제외할 수 있으며 유치원 교사는 제24조에 따름)

- 시군간 전보 희망자
- 관내 근속년수가 많은 자
- 상위직 자격취득일 선순위자
- 파견복귀자(완주교육지원청 직속(부설)기관의 파견복귀자 제외)

단, 동일 조건 시 다음 순에 의하여 정한다.

- 교육 총경력이 많은자
- 생년월일이 빠른 자 <신설 2023.8.16.>

제21조(교과전담교사의 배치기준) 교과 전담교사는 교과전담 법정정원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치한다.

1. 대규모 학교(12학급 이상), 연구·시범학교 등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2. 전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배치한다.
3. 기타 학교는 윤번제로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보건교사의 배치기준) 보건교사의 배치기준 및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8학급 이상 학교
2. 벽지학교, 5급지 학교
3. 12학급 이상, 학생 수 200명 이상 학교 <개정 2019.8.16.>
4. 6학급 이상의 학교 중 학생수가 많은 학교(보건실이 있거나 설치가 가능한 학교) <개정 2019.8.16.>
5. <삭제 2019.8.16.>
6. <삭제 2019.8.16.>

제23조(특수교사의 배치기준) <삭제 2021.8.20.>

제24조(유치원 폐급에 따른 전보기준) <신설 2021.8.20.>

① 유치원 폐급에 따른 과원교사 발생 시, 타시군 전보는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한다.

1. 타시군 전보 희망자
2. 폐급된 유치원 교사

② 유치원 폐급 등에 따른 과원교사의 관내 전보는 전보서열부에 의거한다. 단, 전보서열부에 의하여 전보가 어려울 경우 별도 서열부를 작성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5조(복직자 및 파견 복귀자 배치기준) <신설 2021.8.20.> 복직자 및 파견 복귀자 배치기준 및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복직 및 복귀교원은 원적교에 우선 배치한다.

② 원적교 복직 및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휴직 및 파견 전 원적교 근무기간에 대한 서열부에 의하여 배치한다. 단, 전보서열부에 의하여 전보가 어려울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해 배치한다.

1. 휴직(파견 등) 또는 순환전보로 인한 결원 예정학교
2.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순으로 배치(별도정원)
   단, 별도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제 교사(2주 이상)가 필요한 학교에 겸임 발령할 수 있다.<개정 2023.8.16.>

[별표 1]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 기준

1. 경력점(본군 동일교 최근 5년, 동일직위) <개정 2021.8.20.> <개정 2023.8.16.>

단, 벽지학교 전보희망자 경력평정은 본군 최근 8년, 동일직위

가. 경력평정기간은 전보서열부 작성 기준일(매 학년도 말) 현재로 현임교 근무기간으로 평정한다.

나. 본 군 급지 구분 및 경력 환산기준

다. 복수교감 근무학교 교감은 5급지로 한다.

급지	학교(기관)명	학교수	1년 간 경력 환산점
1	동상, 봉동, 봉서	3	2.5 (월 0.208)
2	용봉, 이서, 삼례, 삼례중앙, 상관, 청완, 봉동유치원, 봉서유치원	6(2)	2.625 (월 0.218)
3	태봉,고산,삼우,송광,동양,구이,청명,이성, 용진,간중,남관,봉성,삼례동,소양,소양서	15	2.75 (월 0.229)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완주Wee센터	2	
4	가천, 화산, 비봉, 대덕, 양화분교	4(1)	2.875 (월 0.239)
5	운주	1	3.0 (월 0.250)
계		29교(2원, 1분교) 2기관	

2. 벽지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

(벽지학교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교원에게만 부여) <개정 2021.8.20.>

벽지학교 근무연수	근무경력 없는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상	비고
가산점	7	4	3.5	3	2.5	2	1	6개월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

(벽지학교진흥법 발효 후, 본군, 타 시·군 벽지 근무경력 포함)

3. 근무성적 조정점(삭제)

4. 우대 가산점(본군 동일교 최근 5년, 동일직위)

단, 훈장 및 표창장은 '가' 항에 따르며, 벽지학교 전보희망자 우대가산점은 본군 최근 8년, 동일직위<개정 2023.8.16.>

가. 훈장 및 표창장(최고 훈격 1회분과 교육장 표창 1회분)

○ 최고훈격은 교육감 표창 이상으로 근무시군, 수상시기, 직위에 제한이 없음

○ 교육장 표창은 동일교 최근 5년 이내 수상분만 인정함. 단, 벽지학교 전보희망자는 본군 최근 8년 이내 수상분만 인정함. **<개정 2021.8.20.>** **<개정 2023.8.16.>**

종류	평정점
훈장 및 포상, 모범공무원, 모범교원대상(교육감)	2.5
대통령 표창, 모범교원상(교육감)	2
국무총리 표창	1.5
장관 표창	1
교육감 표창, 총(학)장 표창	0.5
교육장 표창	0.25

나. 연구실적(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등급 \ 규모	전국대회	도대회
1	2	1
2	1.5	0.5
3	1.0	0.25

○ 평정범위 : 1년에 1종목만 인정

다.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근무(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지정 이상 1년에 0.25점(월 0.021) **<개정 2023.8.16.>**

○ ~~1년 미만 월수가 6월 이상일 때만 1년으로 인정, 6월 미만은 절사~~ **<삭제 2023.8.16.>**

○ 단, 연구학교에서 연구학교로 전보할 경우 연구학교 우대 가산점은 제외한다.

라. 교원기능장(삭제)

마. 효행교원(1회에 한함)

○ 시·군 단위이상 기관장의 효행상(표창) 수상자

○ “가” 항 포상 훈격별 평정점에 해당 효행상(표창)의 10%를 가산한 점수 부여

바. 삭제(노부모 봉양)

사. 복식학급 담임교사(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1년에 0.25점(월 0.021점)

○ 적용시기 :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

아. 교과전담교사(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19.8.16.>**

적용시기	월	년
2015.03.01.부터	0.021	0.250
2020.03.01.부터	삭제(가산점 없음)	

※ 2020.2.29. 실적까지만 인정

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1년에 0.25점(월0.021점)

○ 적용시기 :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

차. 영어 전보 가산점 <개정 2021.8.20., 2023.3.1.자 인사부터 적용>

○ 전보일 기준(해당연도 3.1자 기준) 2년 이내 해당 영어 관련 인증서 취득자

New TEPS 점수	TOEIC 점수	TOEFL 점수 (IBT)	전보 가산점
502 이상	930 이상	111 이상	0.75
392 이상	815 이상	95 이상	0.50
273 이상	635 이상	70 이상	0.25

카. 유치원 동화구연(도규모대회 이상 가장 우수한 입상분 1회)

등급	1	2	3
가산점	0.3	0.2	0.1

○ 적용시기 :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

타. 유치원 자료전시회(도규모대회)

등급	1	2	3
가산점	1	0.5	0.25

파. 삭제(전산능력 보유 교원)

하. 장애인 부양(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 <개정2023.8.16.>

<개정 2021.8.20., 2023.3.1.자 인사부터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점 부여

- 장애인 교원
- 장애인 배우자를 1년 이상 부양하는 교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장애인 직계존비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교원 (직계존비속은 1대에 한함)

○ 적용시기 :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

거. 삭제(학교경영 우수학교 근무)

너. 삭제(학습부진아 지도 교사)

더. 각종 대회 지도교사(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21.8.20., 2023.3.1.자 인사부터 적용>

○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의 지도교사(연간 수상실적이 많을 경우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함. 단, 체육지도실적은 제외) **<개정 2023.8.16.>**

○ 지도교사임을 공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품의서, 출장상황 등은 불인정)

등급	1	2	3
가산점	1	0.5	0.25

러. 체육 지도실적 우수교사 <개정 2022.8.18.>

등위	감독교사			담임교사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전국규모 대회 및 동계체전	도단위 대회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전국규모 대회 및 동계체전	도단위 대회
1	3	1.5	0.5	0.5	0.25	0.125
2	2	1	0.25	0.5	0.25	0.125
3	1.5	0.5	0.125	0.5	0.25	0.125

○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당해학교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지도실적에 한하며, 2회 이상의 지도실적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적용 시기 : 2006년 지도 실적부터 인정하고 2007년 3월 1일 부터 적용

○ 지도(감독)교사임을 공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품의서, 출장상황 등은 불인정)

머. 수업개선 우수교사(삭제)

버. 삭제(학교평가 우수학교)

서. 수업개선 우수교사(삭제)

어. 다자녀 양육 교원

○ 3자녀 이상 양육 교원에게 1.0점 부여

○ 2자녀 양육 교원에게 0.5점 부여 <신설 2022.8.18.>

저. 파견교사(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1년에 0.5점(월0.042점)

○ 적용시기 :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

처. 1, 6학년 담임교사 <개정 2019.8.16.>

○ 1년에 0.25점(월0.021점, 2011년 3월1일 근무자부터 시행)
○ 적용시기
- 6학년 담임교사: 2011. 3. 1. 근무자부터
- 1학년 담임교사: 2020. 3. 1. 근무자부터

커.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순회교사

<개정 2021.8.20., 2023.3.1.자 인사부터 적용>

○ 특수교육순회교사 1년에 0.75점(월 0.0625점, 2015년3월1일 근무자부터 적용)
○ 전문상담순회교사 1년에 0.75점(월 0.0625점, 2021년3월1일 근무자부터 적용)

터. 신설학교(이전 개교 포함) 및 통합학교 근무 <신설 2023.8.16.>

○ 1년에 0.12점(월 0.01점), 상한점 0.36점
○ 2024년 3월 1일부터 개교나 통합시점부터 3년간 적용

[별표 2]

학교소재 급지 일람표

순	학교명	벽지	10.3.1~ 도급지	완주급지									비고
				95이전	96-97	98-99	00-03	04-07	08.3.1-14.2	14.3.1~	22.3.1~	24.3.1~	
1	가천		4	4	4	4	4	4	4	4	4	4	
2	간중		3	2	2	3	3	3	3	3	3	3	
3	고산		3	2	3	3	3	3	3	3	3	3	
	(수선)	(라)	•	5	1	1	•	•	•	•	•	•	
4	고산동		•	4	4	4	4	4	4	4	4	4	폐교
5	삼우		3	2	3	3	3	3	3	3	3	3	
6	구이		3	2	5	3	3	3	3	3	3	3	
7	남관		3	2	5	3	3	3	3	3	3	3	
8	대덕		4	3	3	3	3	3	3	4	4	4	변경
9	동상	다	5	5	1	1	1	1	1	1	1	1	
10	동양		3	2	2	3	3	3	3	3	3	3	
11	봉동		1	1	3	2	1	1	1	1	1	1	
	(양화)		4	4	2	3	3	4	4	4	4	4	
12	봉서		1	2	2	3	3	3	2	1	1	1	변경
13	봉성		3	2	2	3	3	3	3	3	3	3	
14	비봉	(라)	4	5	1	4	4	4	4	4	4	4	
	(삼기)		•	3	3	4	4	•	•	•	•	•	
15	삼례		1	1	3	2	1	1	1	1	1	2	변경
16	삼례동		3	2	5	3	3	3	3	3	3	3	
17	삼례중앙		2	2	5	3	3	2	2	2	2	2	
18	상관		2	2	5	3	3	2	2	2	2	2	
19	소양		3	2	5	3	3	3	3	3	3	3	
20	소양서		3	2	2	3	3	3	3	3	3	3	
21	송광		3	2	2	3	3	3	3	3	3	3	
22	용봉		2	1	4	2	2	2	2	2	2	2	
23	용진		3	2	2	3	3	3	3	3	3	3	
24	운주		5	4	5	5	5	5	5	5	5	5	
	(금당)	(라)	·	5	2	•	•	•	•	•	•	•	
	(산북)	(라)	·	5	•	•	•	•	•	•	•	•	
25	이서		2	1	4	2	2	2	2	2	2	2	
26	이성		3	2	5	4	4	4	4	3	3	3	변경
27	청명		3	2	5	3	3	3	3	3	3	3	
28	청완		3	2	2	3	3	3	3	3	2	2	변경
29	태봉		3	2	3	3	3	3	3	3	3	3	
30	화산		4	4	4	4	4	4	4	4	4	4	
	(승치)	(다)	·	5	1	1	•	•	•	•	•	•	
	(운산)	(다)	·	5	•	•	•	•	•	•	•	•	
31	봉동유		2					2	2	2	2	2	
32	봉서유		2						2	2	2	2	
33	특수교육지원센터									3	3	3	신설
34	Wee센터										3	3	신설 (21.3.1.부터 적용)

부 칙

1. 본 기준은 200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기준은 200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 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 4-다-(1)-(라) 항,
   4-다-(3)-(다)-① 항,
   전보서열부 작성기준 4-가 항, 4-머 항은 2007년 3월1일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본 기준은 200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전보서열부 작성기준 1항(경력점) 및 4항(우대가산점)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전보서열부 작성기준 4항 우대가산점 중 『자』항 통합학급 담임교사 가산점은 2008년 3월 1일 통합학급을 담임한 교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0학년도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대가산점 경과조치) 전보서열부 작성기준 4항(우대가산점) 중 『서』항은 2010학년도 인사때부터 시행한다.
변경된 인사관리 평정기준은 인사관계 제법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전북교육 2010-286)에 의거한다.

부 칙(2013.10.0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대가산점경과조치) 별표 I 의 4. 라. 교원기능장 가산점은 2016학년도 학년말 인사때까지만 적용한다.

부 칙(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대가산점경과조치) <별표 I >의 4. 아. 교과전담교사, 4. 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우대가산점은 2015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4.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대가산점경과조치) <별표 I >의 4. 가. 훈장 및 표창장(최고 훈격 1회분과 교육장 표창, 단 최고 훈격은 교육감 표창 이상으로 하고 동일교 최근 5년 이내 수상한 교육장 표창 2개를 합하여 인정한다. 우대가산점은 2017.3.1.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8.22.)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1항, 제12조 1항은 2018.3.1.자 전입자부터 적용한다.(2017.12.18., 인사위원회 수정사항)

부 칙(2019.8.16.)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20.)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2021년 학년말 인사업무처리부터 적용)한다.
제2조(벽지학교 전보서열 평정기간 및 우대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취득한 우대 가산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아래의 제15조 ②항 및 우대가산점은 **2023.3.1.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 제15조 ②항 벽지학교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전보서열 평정기간은 동일교 상관없이 최근 8년으로 한다.
- <별표1>의 4. 차. 영어 전보 가산점
- <별표1>의 4. 하. 장애인 부양 가산점
- <별표1>의 4. 더. 각종 대회 지도교사에서 ([러]항의 체육 지도실적 우수교사 가산점과 중복인정 불가능)
- <별표1>의 4. 커.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순회교사 중 전문상담순회교사 가산점

부 칙(2022.8.18.)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16.)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